

# 2월 노동법률 뉴스레터

## ‘소정근로시간’ 해석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 관련 이슈 분석

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‘소정근로시간’ 해석과 관련된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(17.12.22) 선고되었습니다.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‘소정근로시간’은 ‘주휴시간이 제외된 실근로시간’임을 명확하게 밝혔는데,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### I. 최신 대법원 판결(2014다82354) 분석

#### 1. 개요

##### ○ 대법원, 주휴수당 관련 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‘월 소정근로시간’에서 제외 (2017.12.22 선고 2014다82354 판결)

- 원심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(월220시간)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판단
- 그러나, 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고,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(1주 44시간)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
  - 월 소정근로시간 : [주 44시간(주휴시간 제외) x (365÷7)] ÷ 12 = 191시간

※ 본 사건은 2006년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‘소정근로시간(실근로시간)’과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(주휴수당 포함 시간)이 다를 수 있음을 재확인했으며, 특히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힘

#### 2. 판결 주요 내용 분석 (소정근로시간 해석 관련)

##### ○ 주휴수당 관련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‘소정근로시간’에 포함될 수 없음

-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,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,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 같을 수 없음 (대법원 2007. 1. 11 선고 2006다64245판결 입장 유지)

[최저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] 근로기준법 제50조(주40시간)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
[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] 소정근로시간 +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

##### ○ 최저임금액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함

- 원심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(기본급 220시간)에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포함됨
-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‘소정근로시간’을 ‘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’으로 정의하고 있고, 이 사건 노사는 임금협정서 제4조를 통해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,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해 놓고 있음

## II. 최저임금의 산정 및 관련 이슈

### 1. 최저임금 산정 방식

$$\frac{\text{① 최저시급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}}{\text{② 최저시급 산정 기준 시간}} \geq \text{고시된 최저시급 ('18년 7,530)}$$

#### 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(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)

- '소정근로의 대가'로 '매월 정기적'으로 지급되는 것으로, 최저임금 규범목적에 부합하는 임금
  - ⇒ 산 입 :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(기본급, 직무수당 등)
  - 미산입 : [1개월 초과] 정기상여금, 근속·정근수당
  - [소정근로 외의 금품]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수당
  - [복리후생 성격의 금품] 가족수당, 단체개인연금 등

#### ②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(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)

구 분	산정 기준시간	산정식	'18년 최저임금
대법원 판례	174시간	[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] × [365일 ÷ 7일 ÷ 12월]	1,310,220원
고용노동부 행정해석	209시간 (토요일 무급)	[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휴휴 8시간] × [365일 ÷ 7일 ÷ 12월]	1,573,770원
	243시간 (토요일 유급)	[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휴휴 8시간 + 토요일유급 8시간] × [365일 ÷ 7일 ÷ 12월]	1,829,790원

예) 매월 기본급 145만원과 직책수당 1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환산 시급은 얼마인가?



○ 월 통상임금 1,550,000 ÷ 174시간 = 8,908원 > 7,530원 ※ 최저시급 상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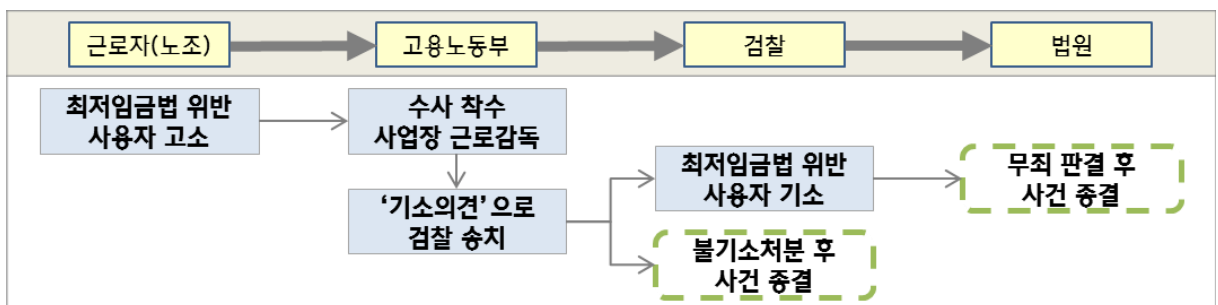
(토요일 무급)

○ 월 통상임금 1,550,000 ÷ 209시간 = 7,416원 < 7,530원 ※ 최저시급 미달

(토요일 유급)

○ 월 통상임금 1,550,000 ÷ 243시간 = 6,378원 < 7,530원 ※ 최저시급 미달

## III.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·고소 시 처리 절차



-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됨
- 다만 징역·벌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,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됨
  - ⇒ 2017년 최저임금 위반 사건 2건 검찰 송치되었으나, 모두 사용자 벌칙 적용 없이 사건 종결
  - 검사 기소 후 법원 무죄 판결(천안지원 2017고정110) / 검사 불기소처분(창원지검 진주시청 형제730)